

#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안번호 제821호)

## 예비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10. 13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3. 10. 13	
다. 상 정 일 자 : 2003. 10. 18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라. 의 결 일 자 : 2003. 10. 22	산업건설위원회 원안가결

### 2.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 예산안 총괄

( 단 위 : 천 원 )

회 계 별	2003. 예산안	기정예산안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264,467,079	168,824,731	95,642,348	56.7
일 반 회 계	256,952,845	161,341,105	95,611,740	59.3
특 별 회 계	7,514,234	7,483,626	30,608	0.4
상 수 도 사 업	3,514,979	3,514,979	0	0.0
하 수 도 사 업	354,428	354,428	0	0.0
주 택 사 업	25,024	25,024	0	0.0
의료보호기금 운영	305,990	275,382	30,608	11.1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1,070,934	1,070,934	0	0.0
농공단지조성사업	758,488	758,488	0	0.0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1,316,811	1,316,811	0	0.0
중소기업육성기금 운 용	167,580	167,580	0	0.0

### 3. 200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세 입

( 단위 : 천원 )

구 분	2003.예산안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감 액	
합 계	256,952,845	100.0	161,341,105	100.0	95,611,740	
세	지 방 세	11,570,000	4.5	10,570,000	6.6	1,000,000
	세 외 수 입	15,803,741	6.1	15,593,721	9.6	210,020
	경상적세외수입	5,571,658	(2.1)	5,391,638	(3.3)	180,020
	임시적세외수입	10,232,083	(4.0)	10,202,083	(6.3)	30,000
	지 방 교 부 세	66,271,700	25.8	61,150,700	37.9	5,121,000
	지 방 양 여 금	16,716,228	6.5	15,180,688	9.4	1,535,540
	조정교부금및제정보전금	4,012,130	1.6	3,272,200	2.0	739,930
입	보 조 금	141,816,046	55.2	54,810,796	34.0	87,005,250
	국고보조금등	112,976,899	(44.0)	32,785,691	(20.3)	80,191,208
	도비보조금	28,839,147	(11.2)	22,025,105	(13.7)	6,814,042
	지 방 채	763,000	0.3	763,000	0.5	0

○ 세 출

( 단위 : 천원 )

구 분	2003.예산안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감 액	
합 계	256,952,845	100.0	161,341,105	100.0	95,611,740	
세	경 상 예 산	35,722,050	13.9	35,450,862	22.0	271,188
	인 건 비	17,490,506	(6.8)	17,425,170	(10.8)	65,336
	경상적경비	18,231,544	(7.1)	18,025,692	(11.2)	205,852
	사 업 예 산	213,975,779	83.3	116,818,391	72.4	97,157,388
	보 조 사 업	186,237,285	(72.5)	91,853,747	(56.9)	94,383,538
	자 체 사 업	27,738,494	(10.8)	24,964,644	(15.5)	2,773,850
출	채 무 상 환	1,989,000	0.8	1,989,000	1.2	0
	지방채상환	1,989,000	(0.8)	1,989,000	(1.2)	0
	예 비 비 등	5,266,016	2.0	7,082,852	4.4	△1,816,836
	예 비 비	2,059,316	(0.8)	4,265,360	(2.6)	△2,206,044
	기 타	3,206,700	(1.2)	2,817,492	(1.8)	389,208

#### 4. 2003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 세 입

( 단위 : 천원 )

구 분	2003.예산안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감 액	
합 계	7,514,234	100.0	7,483,626	100.0	30,608	
세 입	지 방 세	0	0.0	0	0.0	0
	세 외 수입	7,490,034	99.7	7,459,426	99.7	30,608
	경상적세외수입	2,415,718	(32.2)	2,415,718	(32.3)	0
	임시적세외수입	5,074,316	(67.5)	5,043,708	(67.4)	30,608
	지 방 교 부 세	0	0.0	0	0.0	0
	지 방 양 여 금	0	0.0	0	0.0	0
	조 정 교 부 금	0	0.0	0	0.0	0
	보 조 금	24,200	0.3	24,200	0.3	0
	국고보조금	16,000	(0.2)	16,000	(0.3)	0
	도비보조금	8,200	(0.1)	8,200	(0.1)	0
	지 방 채		0.0	0	0.0	0

##### ○ 세 출

( 단위 : 천원 )

구 분	2003.예산안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감 액	
합 계	7,514,234	100.0	7,483,626	100.0	30,608	
세	경 상 예 산	1,927,598	25.7	1,927,598	25.8	0
	인 건 비	123,698	(1.7)	123,698	(1.7)	0
	경상적경비	1,803,900	(24.0)	1,803,900	(24.1)	0
	사 업 예 산	4,721,333	62.8	4,640,725	62.0	80,608
	보조사업	300,990	(4.0)	270,382	(3.6)	30,608
	자체사업	4,420,343	(58.8)	4,370,343	(58.4)	50,000
출	채 무 상 환	393,221	5.2	393,221	5.3	0
	지방채상환	393,221	(5.2)	393,221	(5.3)	0
	예 비 비 등	472,082	6.3	522,082	6.9	△50,000
	예 비 비	259,978	(3.5)	309,978	(4.1)	△50,000
	기 타	212,104	(2.8)	212,104	(2.8)	0

5. 계속비 사업조서 : 해당없음

6. 체무부담 행위조서 : 해당없음

7. 명시이월 사업조서 : 해당없음

8. 2003. 제2회추가경정 보조(국고, 도비, 양여금)사업 편성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고보조	도비보조	도분양여금	군분양여금
경정예산액	계	192,830,450	148,641,920	13,746,414	9,923,597	20,518,519
	국비 (양여금)	129,693,127	112,976,899	0	0	16,716,228
	도비	28,839,147	13,326,026	7,154,687	8,242,434	116,000
	군비	34,298,176	22,338,995	6,591,727	1,681,163	3,686,291
기정예산액	계	96,911,373	56,383,316	11,621,481	9,923,597	18,982,979
	국비 (양여금)	47,966,379	32,785,691	0	0	15,180,688
	도비	22,025,105	8,279,676	5,386,995	8,242,434	116,000
	군비	26,919,889	15,317,949	6,234,486	1,681,163	3,686,291
증감	계	95,919,077	92,258,604	2,124,933	0	1,535,540
	국비 (양여금)	81,726,748	80,191,208	0	0	1,535,540
	도비	6,814,042	5,046,350	1,767,692	0	0
	군비	7,378,287	7,021,046	357,241	0	0

## 10.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3년 기정예산 대비 56.7%가 증가한 2,644억 6,707만 9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9.3% 증가한 2,569억 5,284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가 0.4% 증가한 75억 1,423만 4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경 결정 되었거나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태풍 매미 피해 복구에 따르는 국·도비 지원금을 복구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등 증가된 추가재원으로 지역개발사업비 등을 추가 계상하여 재출된 것으로 2003년 기정예산 1,688억 2,473만 1천원 보다 956억 4,234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 그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3년 기정예산액의 59.3%인 956억 1,174만원이 증액된 2,569억 5,284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의 0.4%인 3,060만 8천원이 증액되어 75억 1,423만 4천원입니다.
-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안은 특별회계에서는 세입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807억 8,725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정예산액 506억 7,434만 2천원에 서 약 159.4% 증가한 1,314억 6,159만 5천원으로서 전체적으로 태풍피해 복구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세입으로는 지역경제과 세외수입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환경녹지과 의 조림사업 국·도비 보조금, 수산과의 남포항 정비사업 등 특별교부세, 건설과의 당항포 진입도로 개설 특별교부세, 2002 수해복구 부족사업비 등 국·도비 보조금, 도시과의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 농업기술센터 소관 논 농업 직불제 국고보조금 등이 증액되었으며, 건설과 소관 한밭대비 용수개발 사업비와 2003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 국·도비 보조금, 도시과 소관 소도읍 개발사업 국도비 보조금, 농업기술센터 소관 도근조생감 가공 시설 국고보조금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 세출예산안은 특별회계에서는 전체 예산의 변동은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금회 861억 7,569만 4천원이 증액된 1,710억 1,325만 6천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액 848억 3,756만 2천원에서 약 101.6%가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되는 예산액의 대부분이 태풍 피해복구 사업비 예산에 편성되었으며, 특히 피해 규모가 큰 수산과와 건설과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각 553%와 167%가 증가 되었으며, 일반사업비로는 일부 실과의 특정 사업비중 사업비 증가 또는 감액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전체적인 변동은 없으나 지역경제과 소관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중 울대농공단지 오·폐수 관거 정비 추가공사 사업비가 편성되었으며, 도시과의 상수도사업 특별 회계에서는 노후관 개량사업 및 상수도관 시설확장 사업비 일부가 증액되었습니다.
- 제출된 200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바 추가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의 변경결정된 사업비 조정과 지방세 수입 등의 증가된 재원으로 지역개발 사업과 주민편익 사업 등에 계상하였으며, 본위원회 소관의 기정예산에서 금번 증가되는 예산액(861억7,569만4천원) 수치로 대비하면 약 99.5%의 금액(857억 4,284만 8천원)이 태풍피해 복구에 따르는 예산이었으며, 일부 경상비 등에 증액된 부분도 필요 불가피한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 다만 지역경제과 소관 133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증액부분, 환경녹지과 소관 146페이지 소각시설 상수도요금예산, 147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주변 토양오염도 조사용역비 전액삭감, 건설과 소관의 167페이지 한밭대비 용수 개발 사업비 국비 삭감부분, 168페이지 경지정리사업 국·도비 감액과 군비 부담 증가부분, 도시과 소관의 184페이지 소도읍 개발사업비의 전액 삭감 부분,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의 203페이지 우리밀 민속체험마을 조성 보상, 204페이지 공룡나라 태극애호박 자동선별 포장기 보급지원 같은 페이지 지역개발시설 태풍 피해복구비의 전액 군비만으로 편성 등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11. 질의 및 답변

- 문 : 농공단지 오·폐수 관거정비 추가공사 부분은 현재 어떤 상태인지?
- 답 : 당초예산으로 공사중 추가 시공되어야 할 추가 사업으로 현재 남아 있음.
- 문 : 자체사업 시설비중 도시계획구역 노면 재도색 시공때 단가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업체의 견적을 받는지?
- 답 : 도색시공 수준에 따라 단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단가 계산은 건설표준 품셈에 의해 설계함.
- 문 :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과 관련, 결론적으로 하천 폭이 좁아지는데 폭우시 유수에 지장을 주는 것 아닌가?
- 답 : 하천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시행할 것임.
- 문 : 하수종말처리장 상류의 송학천 등은 하천폭 확장 등 정비를 하는데 하류부분은 환경단체와의 관계 등으로 정비가 되지않고 있는데 정비 계획은?
- 답 : 1단계 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시행하고, 이후 2단계 사업시 환경단체 등과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겠음.
- 문 : 경운기 구입가격과 활용처는?
- 답 : 폐기물 종합처리장내 폐기물 운반과 해충 구제방역 약품 살포 등에 활용코자 하며, 경운기와 방제기 등을 포함하는 가격임.
- 문 : 폐기물처리장 약품대 절감에 따른 약품 미사용으로 2차적인 오염이 있는 것은 아닌지?
- 답 : 약품을 적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남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임.
- 문 : 토양오염도 조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 답 : 비위생 매립장 정비를 하면 오염조사가 필요치 않다고 보았음.
- 문 : 주민들의 의혹이 없도록 정비전 오염도와 정비후의 오염도가 비교될 수 있도록 조사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 답 : 내년도 사업추진시 고려하도록 하겠음.

- 문 : 남포항은 2종어항으로 기히 지원이 많은데 특별교부세를 또 지원하는 이유는?
- 답 : 지방어항(2종어항)으로 현재 추진중인 정비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부족사업비 지원임.
- 문 : 경지정리 사업에 있어 국·도비가 감액되면 군비도 부담 비율에 따라 감액되어야 할 것인데 국·도비 감액되는 부분과 늘어나는 사업비를 군비로 충당하는 이유는?
- 답 : 사업비 부담 기준이 국비 80%, 지방비 20%인데 헥타당 기준사업비의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는 자치단체 부담으로 하고 있음.
- 문 : 경지정리 사업지구는 어디이며,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 답 : 월흥지구 45헥타이며, 사실상 사업여건 자체가 불량하여 기준단가 보다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를 군비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문 : 이재민 수용시설(컨테이너) 임차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 답 : 주택복구 완료하게되면 돌려주어야 됨.
- 문 : 2002년 수해복구 사업비가 추가되는 이유?
- 답 : 일부 보강사업을 위해 국·도비 추가 요구한 사항임.
- 문 : 도로부분 태풍피해 복구에 있어 시설공사비에 비하여 설계비와 감리비 비율이 높은 이유는?
- 답 : 자체 설계외 외주용역 설계비를 포함한 사항이며, 과목 자체가 시설비 이므로 여유분은 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음.
- 문 : 거주하는 인구에 비하여 태풍매미 피해 와도 시설복구비가 많이 소요 되는데?
- 답 :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어차피 복구를 해야하는 상황임.
- 문 : 자체사업으로 기히 편성된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비가 감액되는 이유?
- 답 : 일부 태풍피해 복구비가 투입되는 사항임.
- 문 : 소도읍 개발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이유?
- 답 : 금년도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 응모하였으나 금년도 사업 대상에 선정되지 못하여 삭감하는 부분임.



- 문 : 태극애호박 자동선별 포장기 구입지원에 있어 50%를 지원하는데 자부담(50%) 내역은?
- 답 : 자부담분이 별도 있는 것이 아니라 총사업비 중 50%를 지원하는 것임.
- 문 : 설치 지역은 어디인가?
- 답 : 하우스 시설 작목집단 지역인 영오·개천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할 것임.
- 문 : 농가경영 컨설팅 전문지도사 해외농업연수 지역·인원은 어떻게 되며, 요구한 여비로 가능한가?
- 답 : 연수인원은 1명이며, 호주, 뉴질랜드 지역임, 여비는 예산외 국비 50%가 별도 지원됨.
- ※ 당부 : 해외연수에서 얻은 지식을 농가에 충분히 보급할수 있기를 바람.
- 문 : 선진농업 벤치마킹에 참여하는 학습단체는 어떻게 되는가?
- 답 :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가 학습단체이며, 국내 선진 우수 농업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음.
- 문 : 축산분뇨 처리 지원사업 국비가 감액되는 이유?
- 답 : 신청자중 포기자로 인한 감액되는 부분임.
- 문 : 환경오염 예방 차원에서 농가 홍보를 철저히 하여 농가를 대체하여 지원할수 있다고 보는데 홍보부족 아닌가?
- 답 : 추가 신청자가 없었음. 앞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 ※ 당부 : 환경오염 예방 차원에서 국·도비 지원이 없다면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축산분뇨 처리 시설의 보급을 늘리도록 노력바람.
- 문 : 양봉산업 구조개선은 어떤 사업인가?
- 답 : 쉽게 말씀드리면 개량 벌통 보급 사업임.

## 12. 토 론 : 없음

### 13. 심사결과

#### 가.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회 계 별	군수제출안	심 사 사 항		수 정 안	비 고
		삭 감 액	증 액		
계	131,461,595	0	0	131,461,595	
일반회계	126,666,120	0	0	126,666,120	
특별회계	4,795,475	0	0	4,795,475	

#### 나.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회 계 별	군수제출안	심 사 사 항		수 정 안	비 고
		삭 감 액	증 액		
계	171,013,256	0	0	171,013,256	
일반회계	166,217,781	0	0	166,217,781	
특별회계	4,795,475	0	0	4,795,475	

다. 예산삭감 및 수정현황 : 세입·세출부분 변동없음